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 11. 8.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10월 29일
- 다. 상정일자 : 제8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 (2001. 11. 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김 재 형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재산과 전세금의 산출방법·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구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구유재산을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 관리위탁 하는 구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을 구유재산으로

로 할 수 있는 그 범위·구분 및 종류의 확정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 외에 100분의 5의 요율로 징수하도록 한 토석 채취료를 필요에 따라서 100분의 5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규제사항을 삭제함.(안 제23조)

○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범위와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경우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4조의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토지를 대부하였을 때에는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7조)

○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2000. 10. 20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1. 4. 4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행정자치부장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이첩 시달되고 2001. 7. 16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개정내용>

○ 안 제4조에서는 위탁계약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수입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제3항제2호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 의거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으로 추가 규정하였음.

○ 안 제10조제2항은 안 제6조제3항제3호 및 제1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포함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음.

○ 안 제21조에서는 현행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은 부칙규정에 IMF 기간동안인 2000. 12. 31까지만 적용하도록 규정된 한시적 규정으로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삭제하였고, 안 제27조제2항에서는 현행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문을 새로 제22조제6항 단서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규정으로 신설·정리하였음.

○ 안 제24조의2 신설규정은 구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처리기준을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2001. 7. 16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에서 특이

한 것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 시설물과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은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안 제24조의2의 규정을 신설하여 전세금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참고적으로 보고 드리면 안 제4조제2항과 같이 가운뎃 점 등의 부호 및 자구 등이 오타 된 부분은 동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후 기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조문을 검토하신 후 자구를 정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

제출년월일 2001. 11.
제 출 자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전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대상재산과 전세금의 산출방법·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을 정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 점유자에게 사전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변상금 부과에 따른 구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구유재산을 관리위탁하고자 할 때 관리위탁하는 구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나.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을 구유재산으로 할 수 있는 그 범위·구분 및 종류의 확정사항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
- 다. 행정규제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 외에 100분의 5의 요율로 징수하도록한 토석채취료를 필요에 따라서 100분의 5이상 징수할 수 있도록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규제사항을 삭제함.(안 제23조)
- 라.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구유재산의 범위와,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경우 전세금의 산출방법, 전세금의 수납 및 반환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4조의2)
-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토지를 대부하였을 때에는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7조)

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28조의2)

3. 개정근거

가. 근거법령

- (1) 지방재정법시행령(2001.6.30 대통령령 제17288호) 제78조제2항 및 제100조의3제2항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9.7 법률 제6024호) 제2조제2호
-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2001.3.28 법률 제6452호) 제2조
- (4) 도시계획법(2000.1.28 법률 제6243호) 제3조제7호
- (5) 조세특례제한법(2001.5.24 법률 제6480호) 제121조의2제1항
- (6) 하천법(2001.1.16 법률 제6367호) 제33조 및 제78조

4. 개정조례(안):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 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5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를 “법 제88조”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중 제3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⑪제3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다. 군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제9조중 “규정에 따라”를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를 위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중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사용·수익 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

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의 제목“(사용허가 기간)”을“(사용·수익허가 기간)”으로 하고, 동조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으로,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각각 한다.

제14조의 제목“(사용허가부의 비치)”를“(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동조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로 한다.

제18조의3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안의 구유재산

제21조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이하 “수급자”로 한다)”로 하며, 동조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중 제1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영 제92조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주한 외국공관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목축·광업·채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2.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임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 한다.

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내에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⑤구유입야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단,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5이상,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22조의2중 제2항을 삭제한다.

제22조의3 본문중 “사용허가”는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동조, 동조제1호 가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9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중 제5항을 삭제한다.

제24조본문중 “건물 등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산출”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한 때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서울특별시마포구금고 은행의 1년 정기 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

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제1항에서 정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마포구재무회계규칙 제7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

⑤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는자(이하 "전세자"라 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 예정일 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

2. 전세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제22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 등)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 등)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구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중 “하천법 제77조”를 “하천법 제78조”로 한다

제38조제3항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5항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제38조의2제1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를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탁재산의 관리) 공공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영업수의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전대사용 하는 때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p>	<p>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②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제5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p> <p>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구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2.(생략)</p> <p>②~③(생략)</p> <p>④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p>1. 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신고한 경우,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인으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2. 재산담당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발견 신고한 경우.</p> <p>⑤(생략)</p>	<p>제5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p> <p>①법 제88조</p> <p>-----</p> <p>-----</p> <p>-----</p> <p>-----</p> <p>1.~2.(현행과 같음)</p> <p>②~③(현행과 같음)</p> <p>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 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현행과 같음)</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②(생략)</p> <p>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2. 재산의 용도변경,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p> <p>3. 기타 구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①~②(현행과 같음)</p> <p>③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p> <p>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p> <p>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p> <p>4. 기타 구유재산 관리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현행	개정안
<p>④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 때</u>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p>
<p>⑤~⑩(생략) ⑪제3항의 심의사항중 영 제84조제3항 각호의 1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⑤~⑩(현행과 같음) ⑪제3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9조(재산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구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p>	<p>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1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가. 특별시·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 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다. 군 지역(광역시의 군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제9조(재산증감 및 현황) ----- ----- 규정에 의한 재정 운영상황의 공개를 위하여 ----- ----- -----</p>

현행	개정안
<p>제10조(관리 및 처분) ①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다만,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제10조(관리 및 처분)①----- -----<u>행정재산·보존재산</u>----- ----- -----</p> <p>② <삭 제></p>
<p>제11조(사용허가의 재산) ①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②행정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p>제11조(사용·수익 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p> <p>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p>제12조(사용허가 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p>	<p>제12조(사용·수익허가 기간)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 -----<u>사용·수익허가</u></p>

현행	개정안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 ----- -----
제14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 부의 비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 -----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생략) 3.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구유재산</u> 4. <u>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구유재산</u> 5.~6.(생략)	제18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1. ~ 2.(현행과 같음) 3.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u> ----- ----- 4. <u>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안의 구유재산</u> 5.~6.(현행과 같음)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3.(생략) 4. <u>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 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u>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 ----- ----- 1.~3.(현행과 같음) <u><삭 제></u>

현행	개정안
<p>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 매각할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5.(생략)</p> <p>6.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9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p> <p><u><신설></u></p> <p>②(생략)</p> <p>③영 제100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 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4.(생략)</p> <p>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5.(현행과 같음)</p> <p>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p> <hr/> <p>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p> <p>②(현행과 같음)</p> <p>③----- ----- ----- -----</p> <p>1.~4.(현행과 같음)</p> <p><u><삭제></u></p>

현행	개정안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 	<p>④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주한 외국공관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p> <p>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③목축·광업·채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과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주한 외국공관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p> <p>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③목축·광업·채석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현행	개정안
<p>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p> <p>2.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입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p>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으로 한다.</p> <p>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도시계획시설내에 있는 재산</p> <p>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p> <p>⑤구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⑥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단,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당해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p> <p>⑦~⑩(생략)</p>	<p>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p> <p>2.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입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p> <p>④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p> <p>1.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도시계획시설내에 있는 재산</p> <p>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p> <p>⑤구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p> <p>⑥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단,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은 제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연간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주택재개발구역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5이상.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p> <p>⑦~⑩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등을 참작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4조(건물 등의 대부료 산출기준) 건물 등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7.(생략)</p> <p><신설></p> <p><신설></p>	<p><삭제></p> <p>제24조(건물 등의 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7.(현행과 같음)</p> <p>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p> <p>제24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p> <p>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으로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하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 보다 구에 유리한 때</p> <p>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p> <p>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p> <p>③제1항·제2항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서울특별시마포구금고 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이상으로 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제1항에서 정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 서울특별시마포구 재무회계규칙 제7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구수입으로 한다.</p> <p>⑤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p> <p>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되어 전세금을 반환함에 있어 그 귀책사유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받는 자(이하 "전세자"라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를 정산하여야 한다.</p> <p>1. 중도해지로 인하여 예금이자율이 변경되어 전세금의 중도해지 이자가 전세금 반환 예정일 까지의 만기이율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전세자가 납부한다.</p>

현행	개정안
<p>제2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③(삭제)</p> <p>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2. 전세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산 금액을 전세금 반환일까지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p> <p>제2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와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27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생략)</p> <p>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계약을 변경하여 매각조건을 달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p> <p>③(생략)</p> <p>〈신설〉</p>	<p>제27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제22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p> <p>③(현행과 같음)</p> <p>제28조의2(변상금의 의견제출 등) ①영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생략)</p> <p>②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부지를 양여받거나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을 양여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④(생략)</p>	<p>②제1항의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구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현행과 같음)</p> <p>②하천법 제78조-----</p> <p>-----</p> <p>-----</p> <p>-----</p> <p>-----</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38조(수의계약 대상 재산의 매각범위 등) ①~②(생략)</p> <p>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p> <p>1.~3.(생략)</p> <p>④(생략)</p>	<p>제38조(수의계약 대상 재산의 매각범위 등) ①~②(현행과 같음)</p> <p>③-----</p> <p>-----</p> <p>-----하천법 제33조-----</p> <p>-----</p> <p>-----</p> <p>-----</p> <p>-----</p> <p>1.~3.(현행과 같음)</p> <p>④(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2.(생략)</p> <p>3.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 면적인 건축법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분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p> <p>제38조의2 (매각대금의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1.(생략)</p> <p>2.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u></p> <p>-----</p> <p>3.~4.(생략)</p> <p>②~⑥(생략)</p>	<p>⑤-----</p> <p>-----</p> <p>1.~2.(현행과 같음)</p> <p>3.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분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p> <p>제38조의2 (매각대금의감면) ①-----</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u></p> <p>-----</p> <p>3.~4.(현행과 같음)</p> <p>②~⑥(현행과 같음)</p>